

# 미국의 대학 운영 정책 및 현황

2011. 11

# 목차

---

## 1. 미국 대학 현황

- 1) 대학 수
- 2) 졸업자 수 및 졸업 비율
- 3) 전공 분야

## 2. 공립대학 (주립대학)의 구성과 운영

- 1) 구성
- 2) 주요 운영 제도

## 3. 대학 거버넌스 구조와 주요 정책

- 1) 연방정부와 공립대학
- 2) 주정부와 주립대학
- 3) 주립대학과 사립대학
- 4) 주립대학 시스템
- 5) 대학 평가 시스템
- 6) 대학 구조조정 사례
- 7) 대학 특성화 정책

## 4. 대학의 재정 운영

- 1) 재정 구조
- 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 3) 연방정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 4)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 5) 기부금 제도

References

# 미국의 대학 운영정책 및 운영 현황

## 1. 미국 대학 현황

### 1) 대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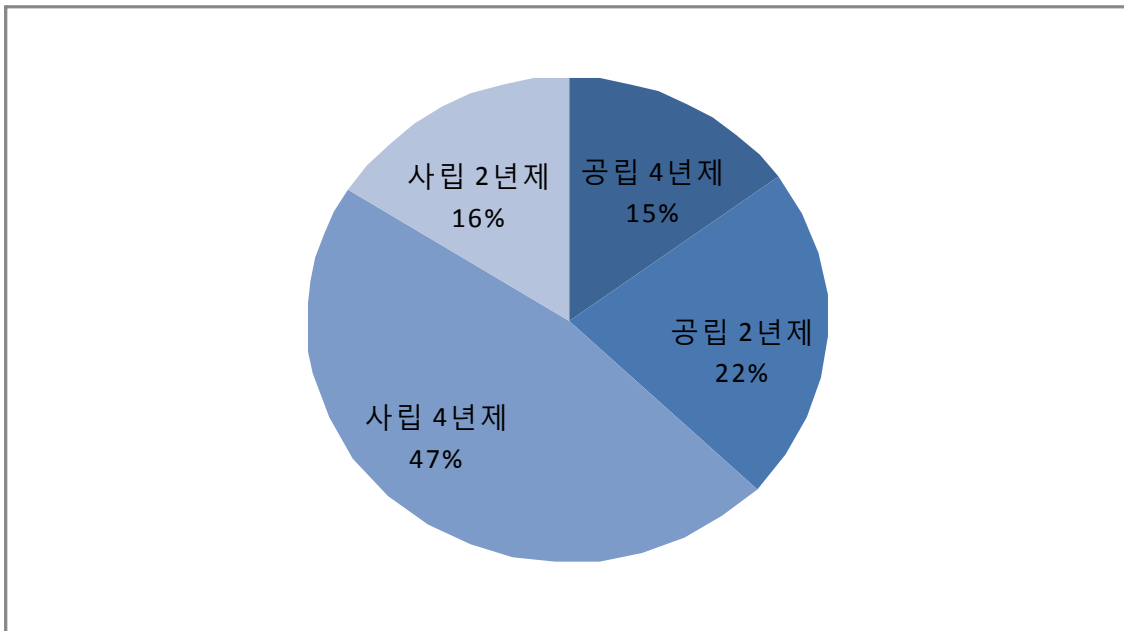
- 미국 대학은 크게 공립 (주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 4년제와 2년제로 구분됨
- 2009-2010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 수는 4,495개이며 이 중 공립대가 1,672개 (전체의 37.2%), 사립대가 2,823개 (전체의 62.8%)로 사립대의 수가 더 많음
- 10년 전과 비교하여 총 대학 수는 411개 (약 10%)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인 대학 수의 증가 속에서 2년제 공립대의 수는 68개 감소했음

<표 1> 2009-2010년도 미국 대학 수

공립대 (주립대)			사립대			공립 + 사립		
4년제	2년제	합계	4년제	2년제	합계	4년제	2년제	합계
672	1,000	1,672	2,102	721	2,823	2,774	1,721	4,495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그림 1> 공립대와 사립대 학교 수 비율



## 2) 졸업자 수 및 졸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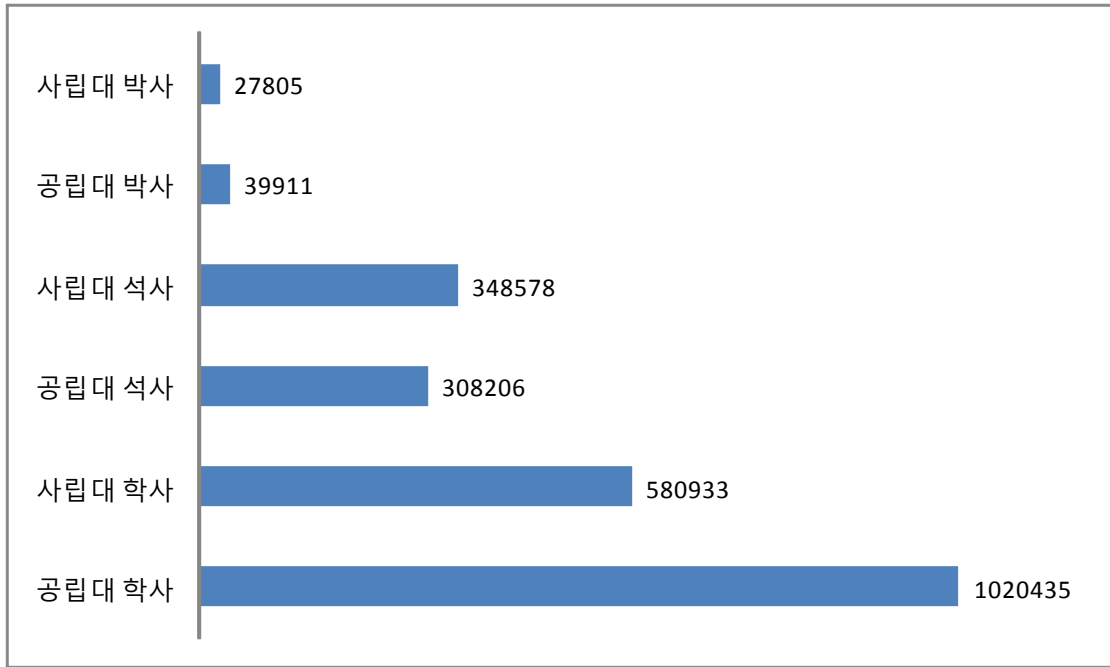
- 2009년도 졸업생 수를 보면 총 학사학위 취득자는 1,601,368명이며, 이 중 공립대가 1,020,435명 (63.7%), 사립대가 580,933명 (36.3%)으로 대학 수와 반대로 졸업자 수는 공립대가 많음
- 반면에 총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656,784명인데, 공립대가 308,206명, 사립대가 348,578명으로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사립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도 총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67,716명으로 이 중 공립대가 39,911명, 사립대가 27,805명으로 석사와 달리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다시 공립대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학위 및 자격 분야에서 모두 10년 전에 비하여 졸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사립대 졸업자 수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표 2> 2009년도 각 학위 및 자격 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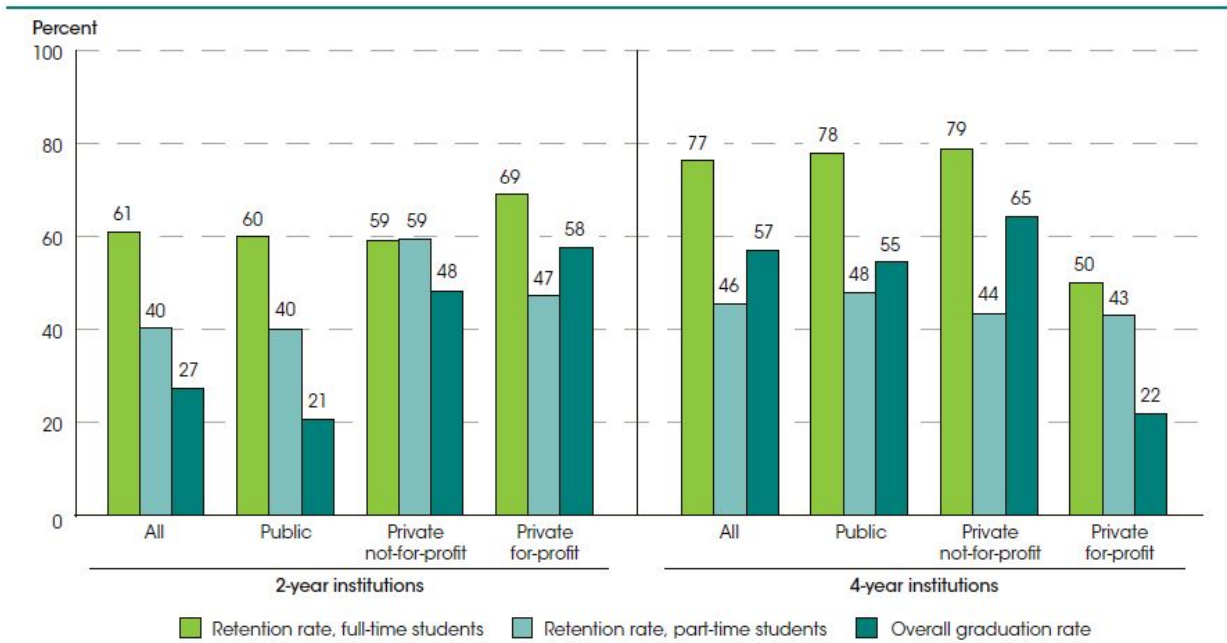
Level of degree and academic year	Total	Public	Private		
			Total	Not-for-profit	For-profit
<b>Associate's</b>					
1998-99	559,954	448,334	111,620	47,611	64,009
2008-09	787,325	596,098	191,227	46,929	144,298
Percent change	40.6	33.0	71.3	-1.4	125.4
<b>Bachelor's</b>					
1998-99	1,200,303	790,287	410,016	393,680	16,336
2008-09	1,601,368	1,020,435	580,933	496,260	84,673
Percent change	33.4	29.1	41.7	26.1	418.3
<b>Master's</b>					
1998-99	439,986	238,501	201,485	192,152	9,333
2008-09	656,784	308,206	348,578	285,098	63,480
Percent change	49.3	29.2	73.0	48.4	580.2
<b>First-professional</b>					
1998-99	78,439	31,693	46,746	46,315	431
2008-09	92,004	37,357	54,647	53,572	1,075
Percent change	17.3	17.9	16.9	15.7	149.4
<b>Doctoral</b>					
1998-99	44,077	28,134	15,943	15,501	442
2008-09	67,716	39,911	27,805	25,169	2,636
Percent change	53.6	41.9	74.4	62.4	496.4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그림 2> 공립대와 사립대 학위 취득자 수



<그림 3> 2009년도 대학 형태별 졸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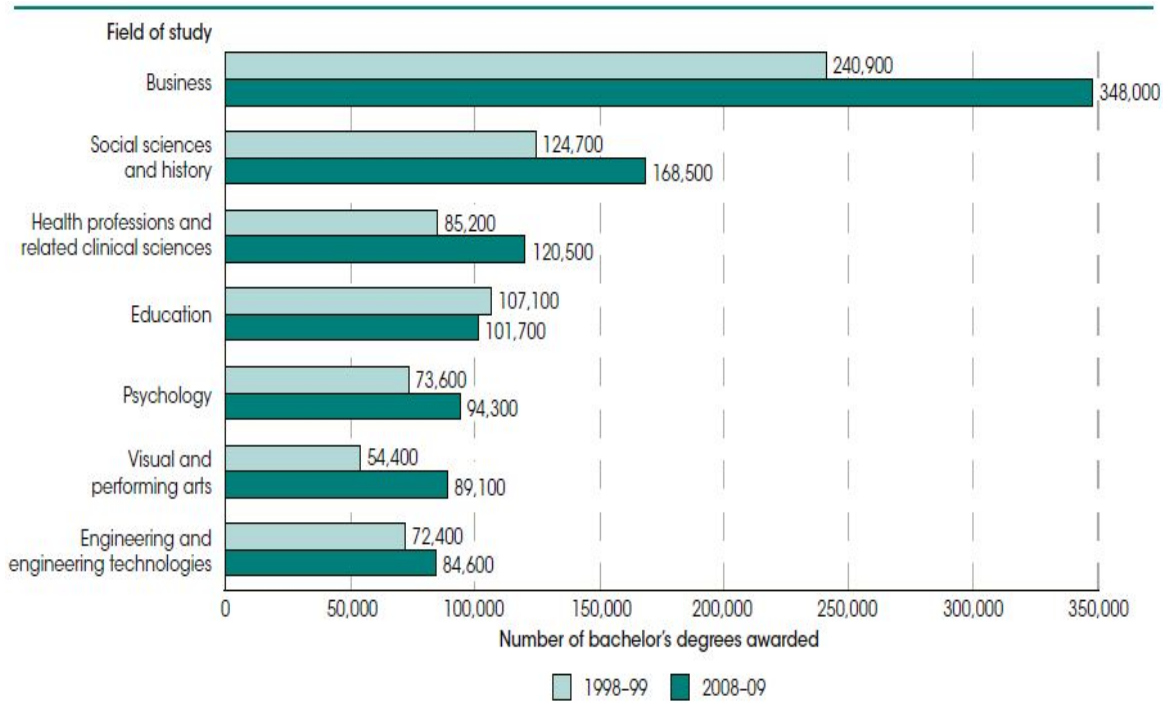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 2년제 대학의 졸업 비율은 4년제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대학들 중에서는 영리 사립대들의 졸업 비율이 공립대 및 비영리 사립대에 비하여 낮은 졸업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그림 3>에서 보듯이 4년제 비영리 사립대의 졸업 비율이 79%로 가장 높은 반면에 2년제 공립대의 졸업 비율은 21%로 상당히 낮은데, 이는 2년제 대학 학생들의 상당수가 졸업 보다는 4년제 대학 편입을 목적으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임

### 3) 전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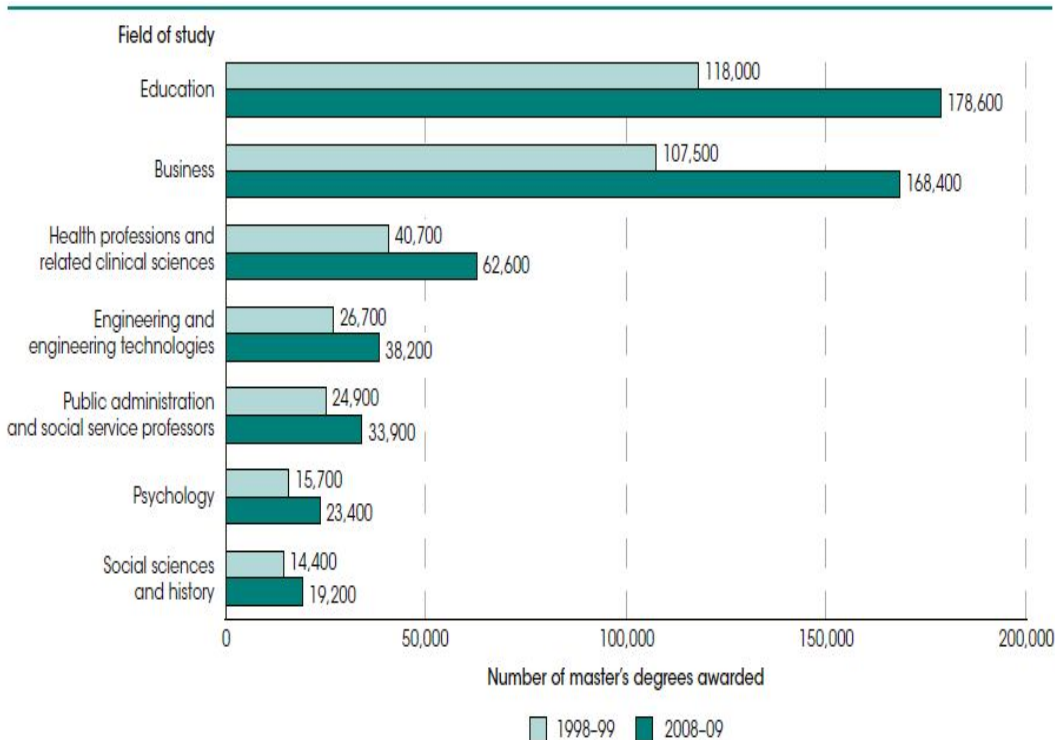
- 2009년도 학사학위 취득자들의 전공을 보면 경영 (Business) 분야가 가장 많은 348,000명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하여 10만명 이상 증가한 것임
-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사회과학 및 역사관련 전공을 하고 있으며 보건 관련 및 교육학 분야 전공자들의 수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학사와 달리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전공은 교육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영 분야임
- 10년 전에 비해 학사과정에서의 교육관련 전공자 수는 감소했으나 석사과정에서의 교육관련 전공자 수는 크게 증가했음
-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영관련 전공자의 수가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그림 4> 학사학위 전공분야 분포와 변화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그림 5> 석사학위 전공분야 분포와 변화



가.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 2. 공립대학 (주립대학)의 구성과 운영

### 1) 구성

#### 가. 이사회 (Governing Board)

- 미국 내 모든 주들은 주립대학의 관리를 위해 한 개 이상의 이사회를 설치하고 있음
- 이사회는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총장의 선임을 비롯하여 대학의 기금, 자원 배분,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및 감독, 기타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시책을 결정함
-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이사들은 주 의회 또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함
- 이사회의 이사들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보통 사람들로 구성되지만, 많은 경우에 주지사, 교육부 장관, 교육감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기도 함
- 이사회의 기본적 임무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학과 재정 및 성과 측면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
- 이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체계의 전반적 임무 개발과 주 헌법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을 설치
  - 소속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전략적인 기획, 예산 및 자원의 배분
  - 재정의 효율적 활용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권고
  - 정치적 이해관계와 고등교육의 이해관계 사이의 완충 역할
  - 인적, 물적 자산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유지 및 보존
  - 고등교육기관의 광범위한 관심을 반영한 정책 (예: 학사 및 학생관련 정책) 개발 및 실행
  - 학위 수여에 관련한 사항
  - 교수 임용 및 기타 인사 관련 정책의 수립 등



## 나. 총장 (President)

- 대부분 주립대학의 운영은 총장 (President 또는 복수 캠퍼스의 경우 Chancellor)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운영위원회가 임명함
- 총장에게는 대학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야 할 책임, 이사회와 정책을 실행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책임, 그리고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금 관리는 물론 새로운 재원을 조성하는 기금 조성자 (Fund Raiser)로서의 책임까지 있음
- 총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학의 각 구성단위들과의 끊임없는 협의 및 책임을 공유해야 함

## 다. 교수

-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교수의 주요 책임은 학생에 대한 교육, 교수방법개발, 연구 등과 관련된 내용들임
- 최근에는 교수의 선발, 승진, 보수를 포함한 근무조건, 총장선출, 대학의 재정운영 등에 있어 교수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평의회는 보통 입법기능, 자문기능, 토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입법기능은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권한임
- 자문기능은 예산, 시설, 학사일정, 대외관계, 인사정책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자문 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토론기능은 교수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대학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임

## 라. 학생

-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학 내 의결기관에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해 왔음

- 미국대학교수연합회, 미국교육위원회, 공립대학 이사회연합 등의 단체들은 대학 운영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학생들이 대학운영에 참여함에 있어 대학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토론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운영에 관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실제로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연합의 결정, 교수평가, 각종 특별활동 등이 있음

## 2) 주요 운영 제도

### 가. 총장 선임제도

- 미국 대학의 총장 선임제도는 대학의 유형과 전통, 지역사회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학의 당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함
- 총장의 자격기준은 시대적 변화와 대학 기능의 변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과거에는 학문적 자질이나 정치적 역량이 강조된 반면, 최근에는 재정확보능력, 경영능력, 지역사회 개발능력 등 다방면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음
- 총장은 주로 내부 인사보다는 대학행정 경험을 보유한 외부 인사가 선호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에서 사립대학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고, 유사한 규모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들 사이의 교류가 많은 편임
- 총장의 공석이 공고되면 첫 단계로 이사회 주관의 총장선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사회, 행정직원 대표, 학생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인사 대표 등으로 구성됨
- 일부 대학에서 총장선임위에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

며, 학생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투표권은 없는 경우가 많음

- 총장선임위원들은 대학의 당면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임될 총장의 자격요건을 결정함과 동시에 총장 후보로 학내 인사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일반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학내 인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지만 대학의 위기상황에 따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총장 영입의 경우에는 내부 인사의 지원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임
- 총장선임위의 조직, 자격요건의 결정 후에는 총장 초빙에 관한 홍보를 하여 모집된 총장 후보들에 대한 구체적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소수로 압축함
- 소수의 최종 후보자 명단이 이사회에 제출되면 이사회는 이 중에서 신임 총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주립대학시스템에서는 현직 총장이 총장선임위원장을 맡아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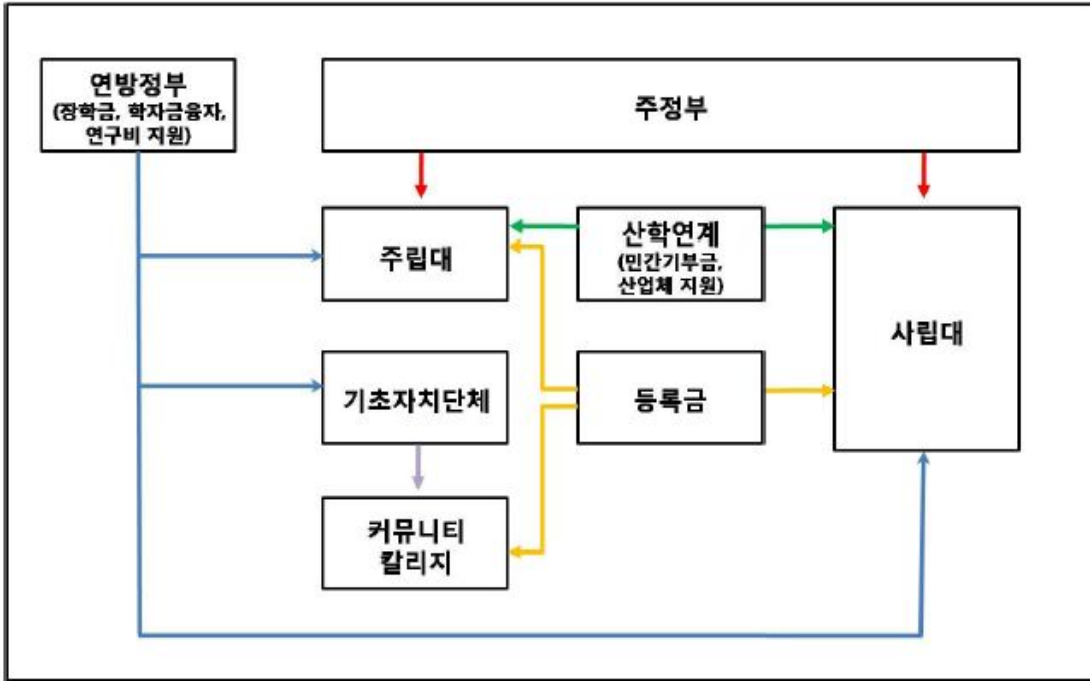
#### 나 예산 제도

- 2차 대전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많은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축소되었으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음
- 주립대학들은 제한된 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중인데, 대부분 '점증식 예산제도' (incremental budgeting system)에 기초한 예산 시스템을 운영 중임
- 점증식 예산제이란 새로운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지원 받은 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매 회계연도를 시작하고, 그 이후 경제성장률과 대학의 사업요구 및 총당 가운 기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증액 책정함

- 이 예산제도는 대학이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서도 매년 신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립대학들이 채택해 왔음
- 그러나 70년대 이후 공적 부문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의 재정이 어렵게 되자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전체의 예산관리를 분권화시키는 감축관리지향의 ‘영기준예산제도’ (zero based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였음
- 영기준예산제이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이나 신규 프로그램을 막론하고 매년 0을 출발점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존속, 축소, 확대 여부를 새롭게 체계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 이 제도는 각 개별 단위기관들이 예산 운용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모든 계층의 관리자가 결정항목의 개발과 평가에 참여함에 따라 업무개선 동기 부여됨
-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평가되므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우선순위의 평가에 따라 보다 중요한 프로그램에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 운영 및 자금 배정의 탄력성 확보 가능
- 그러나 이 방식은 지나치게 분권화되어 있어 대학 전체의 가치나 목표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는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단점의 보완을 위해 절충적인 방안인 ‘책임중심관리’ (responsibility center management)를 사용 중임
- 이는 각 단위기관들이 교육예산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학의 도서관처럼 예산이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는 각 기관의 지출을 근거로 세금처럼 징수하는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단위기관과 행정기관 및 대학본부는 예산배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공유하여 대학 전체의 가치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 3. 대학 거버넌스 구조와 주요 정책

<그림 6> 미국의 대학 거버넌스 구조



#### 1) 연방정부와 공립대학

- 미국은 교육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에 국한 시키고 있음
- 연방헌법에 의하면 교육은 주정부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1980년 교육부 조직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정부의 다양한 학자금보조 프로그램 후원과 대학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제공 등 대학재정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역할은 법률 및 교육정책 등에서 일정부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교육부 조직법 (1980) : 연방교육부의 임무는 “1)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사명 완수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와 지방정부의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들을 지원하고 도우며, 3) 교육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의 보급, 교류를 촉진시키고 지원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4) 대통령과 국회, 국민들에게 연방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5) 시민, 학부모, 학생들이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

## 2) 주정부와 주립대학

- 미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은 해당 주법에 의해 설립되고 승인된 법인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교육기관은 주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함
- 이는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이 주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칙은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의 주립대학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주정부와 주립대학의 관계는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주 정부의 한 조직으로 간주되는 주립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학들은 법률적으로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주정부의 세입과 세출 조항에 의한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통임
- 주정부가 교육에 관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주의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주지사 (Governor)와 주 교육부장관 (Secretary of Education)의 역할이 중요함
- 주지사는 교육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과 교육제도 운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주 교육부장관, 주 교육감, 주 교육위원 및 주립대학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고 감독하는 등 인사와 예산을 통한 조정권을 행사하는 상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주 교육부장관도 주지사와 같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좌하고, 주립대학 운영위원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주정부의 입장을 대학에 알리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함

- 최근 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역할은 ‘통제’에서 ‘거버넌스’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거버넌스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의 역할은 교육기관들을 관리하고 대학에 기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3) 주립대학과 사립대학

- 미국의 대학들은 주립이든 사립이든 정부의 지시나 감독이 아닌 교육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시장 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주립대에 대해서는 경상비와 시설비 지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사립대에 대해서는 경상비와 시설비를 거의 지원하지 않음
- 따라서 주립대와 사립대는 등록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립대를 선택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오랜 전통과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주립대와 경쟁을 하고 있음
- 대체로 사립대는 주립대에 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 통제하는 고등교육 부문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하고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중임
- 주립대와 사립대는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재정적 지원기준만으로 주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기는 어려움
- 주립대가 사립대와 다른 점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 지출금으로 보조를 받는다는 것인데, 주립대는 주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저렴한 수업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립대들은 연구 보조금이나 연구 계약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공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음
- 실질적으로 주립대와 사립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대학의 운영방식인데 최근 들어서는 재정의 규모와 역할 측면에서 매우 유사해지고 있음

#### 4) 주립대학 시스템

- 미국 대학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원리에 의해 대학교육 시장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모집, 교직원 채용,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다른 대학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 주립대 역시 한정된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대학들과 치열한 경쟁 중임
- 주립대학들은 주의 주민들을 수요자로 하여 그들에게 고등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따라 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함
- 이러한 경쟁과 보완의 관계는 별개의 대학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학이 여러 개의 캠퍼스로 구성된 경우에는 단일 대학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주립대학은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캠퍼스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학 자치의 기본 조직을 구축하고 캠퍼스 간 인적 물적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시스템 (University system)을 운영함
- 대표적인 대학 시스템으로는 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뉴욕 주립대학 시스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ystem), 위스콘신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등이 있음
- 대학 시스템은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캠퍼스들로 구성된 종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도 함
- 단일 시스템의 경우 하위 대학들은 소속된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입학 및 졸업 사정, 교직원 채용 및 승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지는 동시에 법인 이사회의 관할 및 통제를 받음
- 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은 전체를 단일 시스템으로 하고 산하에 여러 캠퍼스를 두어 운영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10개 대학 연합 시스템으로 21만 여명의 학생과 16만 여명의 교직원을 보유한 거대 시스템임



- 위스콘신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은 대표적인 종합 시스템으로 단일 시스템과 달리 조정과 책임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들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상호협력을 위해 각각의 대학이 지닌 특성에 따라 시스템 내에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함
- 위스콘신대학 시스템은 위스콘신주의 주립대학을 박사학위수여 대학군 (doctoral cluster), 종합대학군 (university cluster), 평생교육 대학군 (university outreach cluster)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Wisconsin-Madison, Wisconsin-Milwaukee 등 2개 대학이 속해있는 박사학위수여 대학군은 학사부터 박사후 과정까지 갖춘 대학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있음

## 5) 대학 평가 시스템

### 가. 배경

- 미국 대학의 질 관리는 정부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평가기구, 학문분야 평가기구 등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니 학생 수가 늘고 학생 집단이 다양해지면서 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대학 등록금 부담이 커지면서 대학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어 미 고등교육 평가인증 협의회 (Council of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와 같이 평가기구의 질을 관리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
- 대학의 자발적 노력과 자체 관리 체제가 우선시되는 미국에서도 프로그램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다수 대학들이 외부 평가기구가 실시하는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

### 나. 주요 내용

-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이 분류됨

- 특정 지역 내 대학에 대한 기관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지역별 평가인증 조직 (regional organization)
- 특정 종교 및 종파와 연계된 대학에 대한 기관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종교관련 평가인증 조직 (national faith-related organization)
- 주로 직업교육에 특화된 교육을 수행하는 고등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수행하는 직업관련 평가인증 조직 (national career-related organization)

- 위 조직들의 기관 평가인증과는 별도로 의학 및 약학,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 등과 같이 학문 분야별로 대학 내 학문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들도 평가인증 활동을 수행 중임
- 위 평가인증 기관들은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관이며, 인증평가 참여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음
-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나 대학의 구성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활동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인증평가에 참여하고 있음
- 평가인증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대학이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인증평가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민간 인증평가 기관들도 인증평가의 책무성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부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외부평가를 ‘인정’ (recognition)이라고 하며,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조직은 평가인증기구들의 협의체인 고등교육 평가인증 협의회 (CHEA)와 교육부 (USDE)를 들 수 있음
- 지역별 평가인증기관의 인증평가 절차는 <표 2>, 그리고 연방정부 교육부 및 CHEA의 인정 절차는 <표 3> 및 <표 4>를 참조할 것,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평가인증 절차는 표들과 같음

<표 3> 지역별 인증평가 기관의 인증평가 절차

평가인증절차		세부 내용
1	개별 대학의 평가인증신청	-일반적으로 대학이 설립된 시점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최소 인증을 위해 개별 대학이 평가인증기관에 평가인증 신청을 함 -평가인증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학 설립 후 4년~6년이 되는 시점에 최초평가인증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예. 중부지역평가인증협회(MSA)의 경우, 설립 이후 5년 뒤 최초 인증 절차에 들어감 ↓
2	개별 대학 예비 방문	-통상 평가인증 시점의 1년6개월~2년 전에 평가인증기관의 예비 방문이 이루어 짐
3	개별 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은 internal review 또는 self-study라고 불리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평가인증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함. -해당 대학은 자체평가 착수 전에 자체평가계획을 평가인증협회에 제출해야 함.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승인 이후 대학은 자체평가 작업에 착수함 -각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대학의 목적이나 사명의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평가인증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체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임
4	현장 방문 평가 실시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수행할 평가단이 인증기관에 의해 구성됨(external review 또는 peer review라고 함) -외부 평가단의 구성은 대학교수나 평가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되나 대학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음 -현지 방문에서는 학내구성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이 실시됨
5	평가보고서 작성	-현지 방문 평가단은 방문 결과를 평가단원들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함 -동 평가보고서에는 해당 대학을 평가인증 할 것인가의 여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 대학이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권고가 포함됨. -현지 방문 평가단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대해 해당 대학이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음
6	평가인증 여부결정	-해당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현지 방문 평가단의 보고서, 이에 대한 해당 대학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협회는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림.
7	재평가인증	-3년~10년 주기별로 1단계에서 6단계에 걸친 절차를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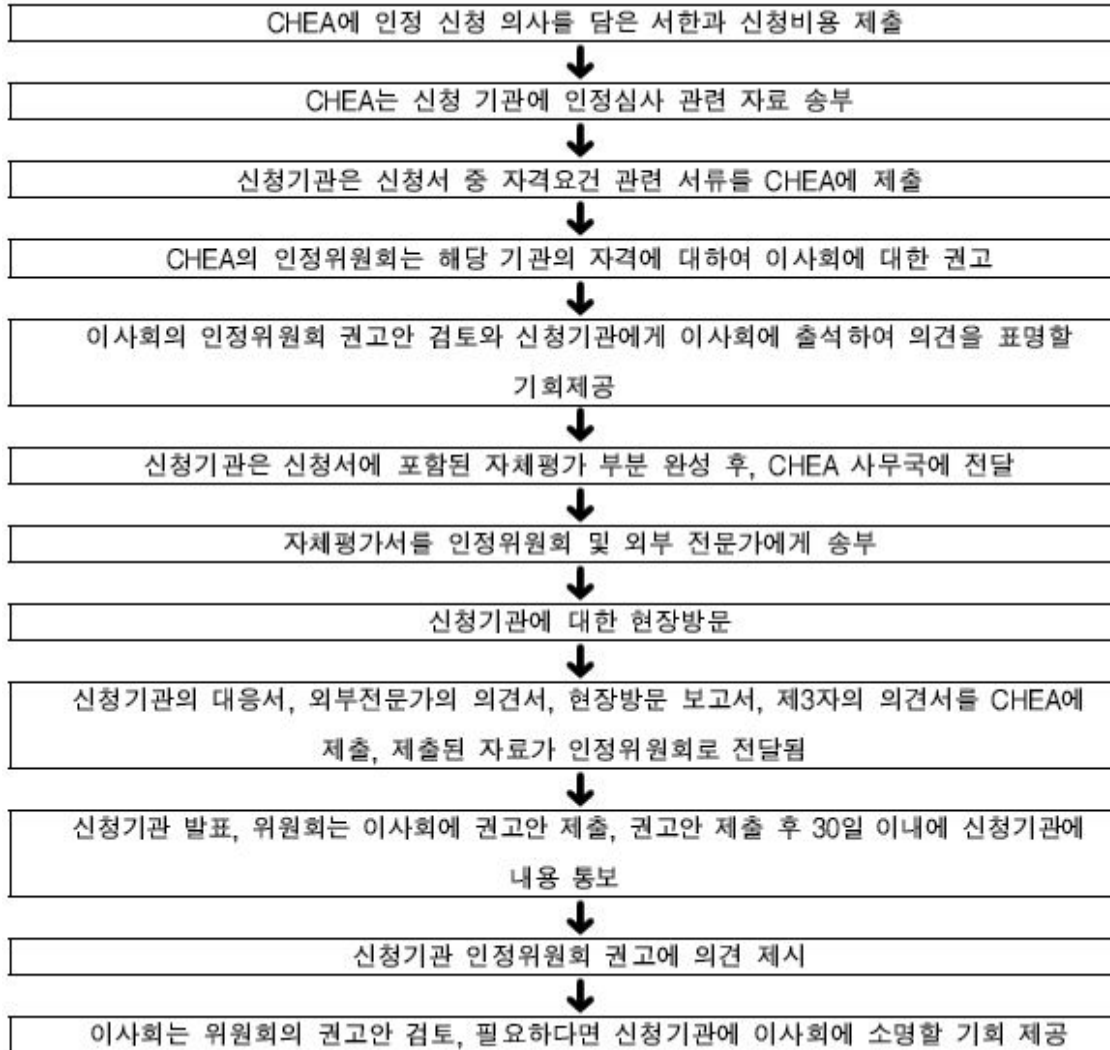
출처 : 유현숙 외 2009

<표 4> 연방 교육부의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인정 절차

인정 절차	세부 내용
1 인정심사의 신청 및 연방교육부 담당 부서의 검토	<p>인정요청서 접수</p> <p>↓</p> <p>인정요청서 분석과 연방교육부의 인정준거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p> <p>↓</p> <p>해당 평가기구가 이미 인증/예비 인증한 대학/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검토</p> <p>↓</p> <p>해당 평가기구가 연방교육부의 인정 준거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인정요청서 반려나, 해당기구로 하여금 인정 요청 철회, 보완, 재신청 권고</p> <p>↓</p> <p>위의 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 작성, 모든 관련서류 NACIQI 송부, 분석 보고서, 다른 평가기구나 대중으로부터 제시된 의견 소명서 제출</p> <p>↓</p> <p>서류 송부불 못했을 경우 NACIQI에 서류 검토 연기 요청</p> <p>↓</p> <p>평가기구가 제출한 의견 검토</p> <p>↓</p> <p>NACIQI가 개최되기 전에 다양한 정보제공</p> <p>↓</p> <p>NACIQI 개최 최소 30일 이전 연방등록소에 회의 개최 공지·의견 개진 기회 제공</p>
2 대학의 질과 정립성에 관한 국가위원회(NACIQI)에 의한 검토	<p>공개 회의를 통해 인정요청서 검토, 동 회의에서 연방교육부 직원, 평가기구 등 관련자들이 구두로 의견 개진할 기회 제공.</p> <p>↓</p> <p>위원회의 검토 후 해당 기관에 대한 인정 여부를 승인, 부인, 또는 인정 결정 연기 등의 형태로 인정 결과에 관한 권고안을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제시</p>
3 연방교육부 장관에 의한 검토 및 결정	<p>연방교육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결정을 내림: NACIQI의 권고, 연방정부의 고위공무원의 권고, 평가기관의 인정신청서와 기타 제출 서류, 평가기관에 대한 연방교육부 담당자의 분석 결과, 연방교육부 담당자가 NACIQI에 제출한 관계자들 의견, 연방교육부 담당자의 분석 및 기타 제출된 의견에 대한 평가기구 답변서 등</p> <p>↓</p> <p>연방교육부장관은 인정 평가 대상 평가기관에게 서면으로 인정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함. 인정과 관련된 결정은 '인정 승인' '승인 거부' '승인 연기' 중 하나의 형태로 결정됨</p> <p>↓</p> <p>연방교육부장관의 최종 인정 결정에 평가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p>

출처 : 유현숙 외 2009

<표 5> CHEA의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인정 절차



출처 : 유현숙 외 2009

다. 언론 기관의 대학 평가 사례 : US News & World Report의 대학 순위 조사

- US뉴스는 신입생 입학성적과 입학 난이도, 지원 경쟁률, 교수·학생 비율, 학교 재정, 대학 간 상호 평가 점수 등을 합산 평가한 순위를 종합대학 및 학부중심 인문대학 (Liberal College) 부문에 걸쳐 발표하고 있음
- 2011년 9월 13일에 발표한 2011-12 대학 평가 순위에서는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가 공동 1위를 차지하며 미국의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는데, 2년 전에는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가 공동 1위, 지난해에는 하버드대가 단독 1위에 올랐었음

- 올해 3위에는 3년 연속 예일대가 자리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의 3강 구도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4위는 컬럼비아대가 차지했고 캘리포니아공대(칼텍),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시카고대, 펜실베이니아대(UPenn) 등 5개 대학이 공동 5위로 평가됐음
-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듀크대는 10위로 미국 남부 소재 대학으로 유일하게 톱 10에 끼었으며, 주립대학 중에서는 버클리대와 남가주대(USC), UCLA, 버지니아대, 앤아버 소재 미시간대, 채플힐 소재 노스캐롤라이나대가 20위권에 들었음
- 학부중심 인문대학 부문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 칼리지가 같은 주에 있는 앰허스트 칼리지를 누르고 3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고 3위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스위스모어 칼리지가 올랐음

## 6) 대학 구조조정 사례 (버지니아 주)

### 가. 배경

- 미국의 대다수 고등교육 정책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소관이므로 강한 분권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기구와 대학이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중인데 이는 대학 구조조정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함
- 1990년대 후반부터 버지니아 주내 대학들에서는 대학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생과 교수, 명성, 자원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이러한 인식 하에 University of Virginia (UVA), College of William and Mary, Virginia Tech (VT) 등 버지니아 주내 주요 3개 대학은 주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
- 3년 이상의 이러한 노력 끝에 2005년 버지니아주 고등교육 구조조정 법안

(Restructured Higher Educatio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Operations Act 2005)이 마련됨

○ 버지니아 대학 구조조정 추진 경과

- 2005년 7월 1일 : 법안 발효
- 2005년 10월 1일 : 경영 협약 교섭
- 2006년 7월 1일 : 경영 협약 발효
- 2007년 5월 8일 : 2005-06 학년도 대학 수행 기준 확정
- 2007년 10월 1일 : 2008-2014 6개년 계획이 주지사 및 주의회에 제출됨
- 2007년 12월 19일 : 경영 협약의 수행 기준이 주 재무장관에게 보고됨
- 2008년 5월 13일 : 2006-07 학년도 대학 수행 기준 확정
- 2008년 가을부터 새로운 인적 자원 시스템 가동

나. 주요 내용

- 구조조정 법안의 핵심은 버지니아의 주립대학들이 주정부가 제시한 11개 성과 목표치 (performance benchmarks)를 달성하는 대가로 등록금 책정, 조달 (구매), 인사, 건설 등에 대한 대학의 운영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3단계 접근법에 의해 시행됨
- 1단계는 주에서 명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대가로 모든 버지니아 주립대학에게 추가적인 운영 권한 (additional operational authority)이 부여되는데, 여기에는 잉여금의 사용, 수입 및 자본 리스의 사용, 특정조달 보고의무 면제 (exemption from procurement reporting requirements), 과거 허가되지 않았던 조달 방법에 대한 허용 등이 포함됨
- 추가로 1단계에 참여한 모든 대학들에게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2단계 및 3단계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일정한 제한 조건 내에서 개별 대학들이 특정한 기능 영역에서 추가적인 자율권을 획득하기 위해 주지사와 MOU를 체결하거나 경영협약을 맺게 됨

○ 구조조정의 실천을 위해 주정부는 대학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대학에 대한 주정부의 구체적인 이행사항 역시 마련함

○ 주정부의 요구사항으로는

- 소외계층 학생이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계수입에 상관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할 것
-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학생들이 정해진 시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학업 지속 비율을 증가시킬 것
- 주 경제개발을 촉진할 것
-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다른 학교들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
- 정해진 재정적, 행정적 관리 목표를 달성할 것
- 6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

○ 대학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 이행사항은

- 잉여자산에 대한 매각, 토지이용권 획득, 학문적 활용을 위한 대학소유 재산수입 또는 자산임대 허용
- 주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10만 달러 이상의 정보공학 장비 구입 권한
- 행정 및 전문 교수요원 채용에 대한 독자적 정책수립 권한
-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건물 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방법 결정 권한
- 주정부와 MOU 교환 권한
- 대학 이사회의 등록금 책정 권한

## 7) 대학 특성화 정책

가. 미국 대학의 특성화 정책

○ 미국의 대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의해 발달되어 왔으나 주정부는 대학운영에 영향력을 최소화 해왔는데, 이러한 지배구조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미국 대학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

○ 이에 따라 미국의 개별 대학들은 주정부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는 상태에서 대학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타 대학과 구별되는 차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특성화’ 등 노력을 지속

- 대학들의 특성화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재정지원과 법규의 정비를 통한 후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한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와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특정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함
- 정부주도의 특성화 정책은 정부와 대학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는 주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 등 주의 권한이 강한 경우 정부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대학의 자발적 특성화 및 정부주도의 특성화와 함께 미국 대학 특성화 중 하나는 대학의 기능별, 역할별 분화를 들 수 있음

<표 3> 미국 대학 특성화 정책 모형

	정부 주도형	대학 주도형	정부 대학 협력형
목표	고급 산업인력 양성 기초 필요분야 인력 양성	대학의 생존 및 발전 전략	대학별 역할 및 기능 분담
유형	지역사회 요구에 따른 특성화 주 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특성화	대학 자체 강점분야의 특성화 학문간 특성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단기대학 등
전략	정부가 지역사회 요구 분석과 필요인력 예측을 통해 기본계획 작성 및 추진 정부가 대부분의 재정을 지원	대학의 사명, 역할에 근거한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 대학 자체의 재원조달 (외부기관, 기부금, 연구비 등)	정부가 거시적 측면에서 고등교육체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 대학은 자체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발전 전략 수립
사례	버지니아 간호인력 양성 프로그램	조지메이슨 대학의 특성화 사례	캘리포니아의 대학 시스템

출처 : 유현숙 외, 2009

- 미국의 경우 대학의 기능별 분화는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으나, 캘리포니아처럼 정부의 강한 주도하에 기능적 역할 분화를 이루기도 하여 이 경우 주정부는 거시적 입장에서 법적 준비를 통해 특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은 이러한 체제 내에서 자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을 채택함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학 특성화 정책 모형은 <표 3>과 같이 정부 주도형, 대학 주도형, 정부 대학 협력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나. 정부주도의 특성화 사례 : 버지니아 간호사 육성 프로그램 (The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2004)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주도의 특성화 사례로 대표적인 것인 현재 버지니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육성 프로그램임
- 2004년 버지니아 주정부는 인력수요 예측을 통해 2020년까지 22,600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
- 이를 위해 주정부는 대학들에게 다양한 지원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간호사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예산 지원방법도 변경
- 주정부는 신규 재원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 배정 시에도 배정된 예산을 간호사 프로그램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예산 방식으로 변경
- 대학 뿐 아니라 간호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원격교육을 강조하여 대학과 사립 원격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거나 각종 행정적 지원을 실시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금 인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하기 위한 것임

다. 대학 주도의 특성화 사례 : 조지메이슨 (George Mason) 대학교

- 미국 대학 특성화 정책에서 특성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대학의 발전 전략에 의한 자발적 특성화 사례로서 버지니아에 위치한 조지메이슨 대학의 사례를 들 수 있음
- 1980년대 초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통해 전통적인 의미의 공과대학이 아닌 정보공학 및 시스템공학 특성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깨달음
- 지역의 기업인들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 양성이 가능한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을 요구했고, 동시에 현재의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함
- 대학 측은 이러한 요구를 주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기업들로부터의 지원을 약속받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조지메이슨대학은 1985년에 정보기술공과대학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gineering)을 설립하였고, 미국에서는 최초로 IT분야의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였음
- 조지메이슨대의 이러한 특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 대학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 지역적,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
  - 적극적인 투자, 특히 우수한 교수 요원에 대한 투자
  - 공립대학으로서 주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들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라는 것

라. 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특성화 사례 : 캘리포니아의 대학 시스템

- 1960년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구, 교육, 봉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대학교육 시스템을 3가지로 분화 시켰음
- 연구중심대학으로 캘리포니아대학 (UC) 시스템, 실무중심의 교육 대학으로 캘리포니

아 주립대학 (CSU) 시스템, 그리고 지역사회 및 주민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컬리지 (CCC) 체제를 구축

- 이 시스템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1-3내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지속중임
- UC는 버클리, 어바인, LA 등 10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캠퍼스에는 총장과 부총장이 있고 연구 지향적 기능에 따라 어떠한 사설 연구기관보다도 활발한 연구 실적을 보이고 있음
- CSU는 23개 주립대학으로 구성되어 교육중심, 학부중심의 대학들로 ‘캘리포니아 경제 엔진’ 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교육과 기술이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체제를 통한 연계학위과정을 강조하고 있음
- CCC는 110개의 전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직업준비 교육 등 이른바 ‘후기 중등교육’ 을 담당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의 대학교육 거버넌스는 교육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차별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거버닝 기구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교육기관 목적의 차이에 대한 인지 및 그에 따라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별로 분화된 이사회가 주의 대학들을 일관성 있는 목표에 의해 관리하고 있음

#### 4. 대학의 재정 운영

##### 1) 재정 구조

##### 가. 수입과 지출

<표 4> 공립대학의 수입 구조

	2004- 2005 (백만달러)	2008- 2009 (백만달러)	총수입액 중 비율 (%)		
			2004- 2005	2007- 2008	2008- 2009
Total	234,842	267,385	100.0	100.0	100.0
영업 수입	136,767	158,799	58.2	55.5	59.4
등록금 및 수업료	38,526	51,840	16.4	17.5	19.4
정부 지원금	44,376	43,096	18.9	15.3	16.1
연방	30,071	26,092	12.8	9.3	9.8
주	6,818	7,403	2.9	2.9	2.8
지역	7,487	9,600	3.2	3.2	3.6
기업 보조금	17,673	21,358	7.5	7.5	8.0
병원	21,772	27,302	9.3	9.2	10.2
기타 영업 수입	14,420	15,202	6.1	6.0	5.7
영업외 수입	85,517	92,448	36.4	38.4	34.6
연방 충당금	1,784	2,011	0.8	0.7	0.8
주정부 충당금	55,325	65,486	23.6	24.9	24.5
지역 충당금	7,687	9,787	3.3	3.4	3.7
정부 무상 지원	3,919	15,747	1.7	4.4	5.9
기부금	4,606	5,894	2.0	2.2	2.2
기타 영업외 수입	2,674	3,011	1.1	0.8	1.1
기타 수입	12,557	16,318	5.3	6.1	6.0

자료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공립대학의 수입원을 크게 영업 수입과 영업외 수입으로 나누어 보면 약 6:4 정도의

비율로 영업 수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영업 수입 중 이전에는 정부 지원금이 등록금 및 수업료 수입보다 많았으나 최근 들어 두 부분의 비중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남
- 공립대학의 영업외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은 주정부의 총당금인 것만 보아도 미국 공립대학의 운영은 주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5> 공립대학의 지출 구조

	2004-2005 (백만달러)	2008-2009 (백만달러)	총지출액 중 비율 (%)		
			2004-2005	2007-2008	2009-2010
Total	215,794	273,030	100.0	100.0	100.0
교육	59,657	75,079	27.6	27.5	27.5
연구	22,551	26,651	10.5	9.7	9.8
공공 봉사	9,418	11,245	4.4	4.1	4.1
학술 지원	14,259	18,805	6.6	6.8	6.9
학생 지원	10,042	12,939	4.7	4.7	4.7
산하기관 지원	17,455	23,079	8.1	8.5	8.5
운영 관리	13,578	17,840	6.3	6.5	6.5
감가상각	9,593	13,719	4.4	4.9	5.0
장학금 등	8,403	11,105	3.9	3.7	4.1
관련 기업	16,664	20,588	7.7	7.5	7.5
병원	20,105	25,945	9.3	9.2	9.5
기타	6,702	5,777	3.1	1.8	2.1
영업외 지출	7,306	10,259	3.4	5.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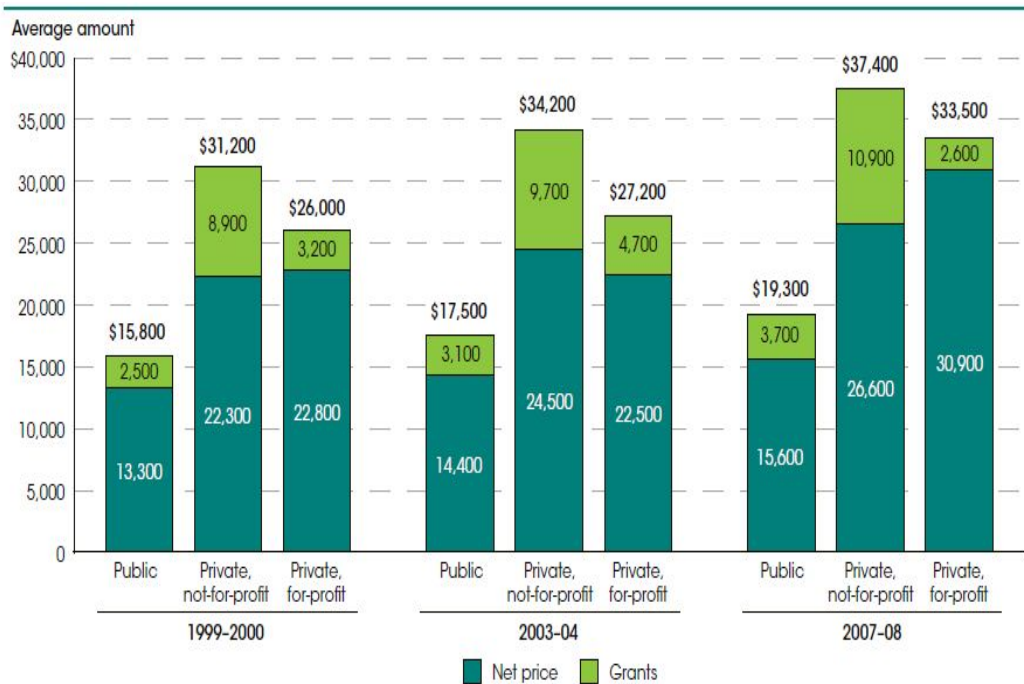
자료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공립대학의 지출에서는 교육기관인 만큼 당연히 교육 부문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나. 학비 현황

-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모두 등록금 및 수업료, 기타 학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비영리 사립대 (private not-for-profit)의 경우 학비가 비싼 대신 공립대 및 영리 사립대 (private for-profit) 들에 비해 장학금 혜택이 많이 있음
- 공립대의 경우 평균 연 학비 19,300달러 중 약 19%인 평균 3,700달러가 장학금 등으로 감면되고 있으며, 비영리 사립대의 경우 평균 연 학비 37,400달러 중 약 29%가 장학금 등으로 감면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영리 사립대의 경우 평균 연 학비 33,500달러 중 장학금 혜택은 약 8%에도 못 미치고 있음

<그림 7> 평균 연 학비와 장학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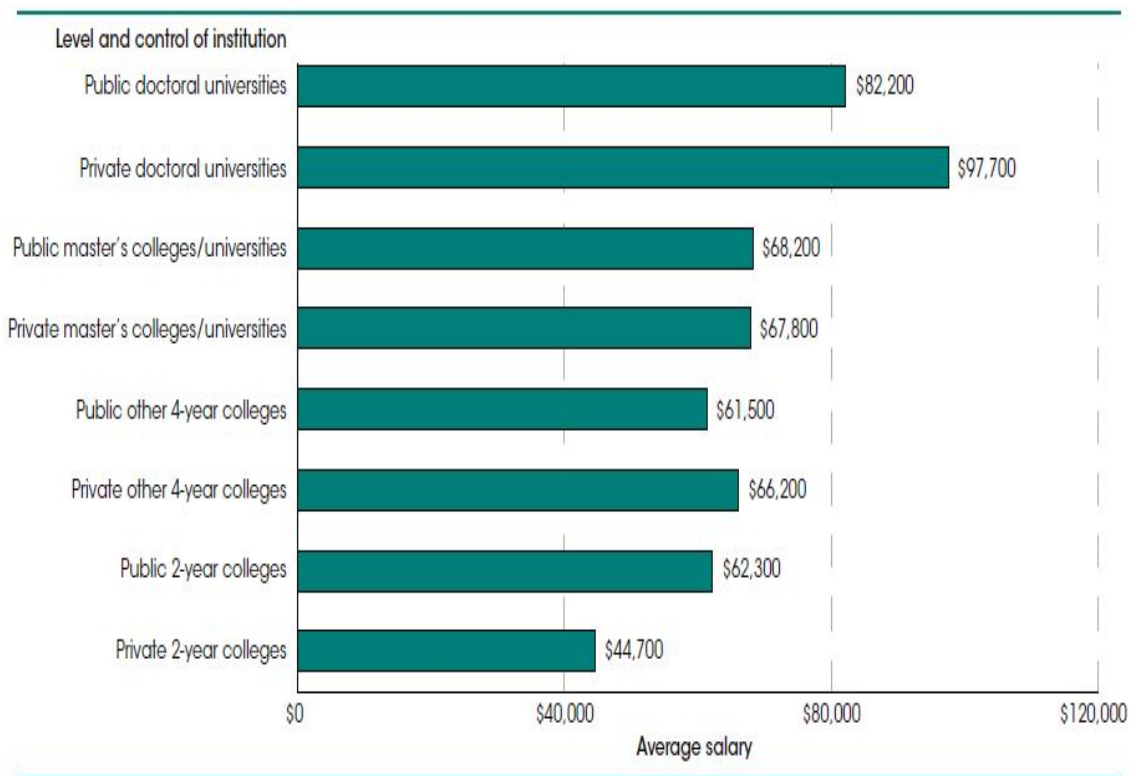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다. 교원 급여 현황

- 미국 대학들은 직업 교육 중심의 2년제 대학부터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연구 중심 대학 등 다양한 유형만큼 교원들의 급여 수준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09-10학년도 기준으로 사립 연구중심 대학 교원 평균 연봉은 97,700 달러로 거의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반면에 2년제 사립대 교원 평균 연봉은 44,700 달러에 불과해 사립 연구중심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침

<그림 8> 2009-10 학년도 대학 유형별 교원 연봉 비교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 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 가. 유형

#### ○ 미국 대학의 장학금은 수혜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무상장학금 : 교육비 필요에 근거하여 수여되며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장학금
- 대여장학금 :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대여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장학금
- 근로장학금 : 대학 내외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 그 임금으로써 교육비를 보조하게 하는 제도
- 사적장학금 : 학문적 재능이나 체육, 예술 특기 등과 같은 특수 자격을 갖춘 학생, 특정 민족, 특정 종교 학생 등에게 수여하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장학금

#### ○ 수여 기관에 의한 장학금의 분류

- 연방정부 장학금 : 연방정부에 의해 수여
- 주정부 장학금 : 각 주정부에 의해 제공
- 대학 장학금 : 각 대학이 자체 재원에 의해 수여  
예)무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록금감면
- 공공 및 민간단체 장학금 :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가 제공
- 개인장학금 : 개인이 자신의 장학이념에 따라 적격자에게 수여

### 나. 종류

####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연방정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참조

#### ○ 주정부 장학금의 예

- 캘리포니아 주 : 캘리포니아 무상장학금, 아동발달 무상장학금 등의 주정부 무상장학금과 주정부 대여장학금, 주정부 근로장학금 및 기타 재능장학금을 운영

- 위스콘신 주 : 위스콘신 고등교육 무상장학금, 위스콘신 등록금 무상장학금, 재능 촉진 무상 장학금, 청각 시각 장애학생 무상장학금, 인디언 학생 무상장학금, 소수민족 학생 무상장학금, 소수민족 교사 대여장학금, 학업우수 재능장학금을 운영

○ 대학 장학금

-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생의 재정 필요나 학업성취에 근거하여 대학자체의 장학금을 지급
- 무상장학금, 재능장학금,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 납입금면제 및 감면 장학금 등을 운영
- 각 대학은 장학금담당기구를 운영
- 각 대학은 연방정부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

○ 기타 장학금

- 사적 장학금
- 지역사회단체 장학금
- 고용주 장학금
- 전문협회 장학금
- 금융기관의 대여금
- 특별 프로그램

3) 연방정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가. 제도적 근거

-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5년 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HEA)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도입되었음
- 처음에는 여러 부처에 관련 예산과 기능이 분할되어 있었으나 1980년에 교육관련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가 설립되면서 학자금 지원관련 예산이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교육부 내의 학생 보조국 (Federal Student Aid, FSA)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연방 및 주정부와 각종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장학금 및 세제혜택과는 달리 보증 형태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이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교육부가 이를 보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간접적 방식을 통해 연방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그것을 통하여 지원 학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유형

-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자금의 조달처, 차입자, 정부의 이자 지원 여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됨

<표 6>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유형

자금조달에 의한 분류		차입자에 의한 분류		이자 지원 <sup>1)</sup> 여부에 의한 분류	
구분	대출기관(Lenders)	구분	차입자(Debtor)	구분	지원여부(Subsidy)
FFELP	시중 금융기관	FPL	학생	Subsidized Stafford Loans	있음
FPL	대학 + 정부	Stafford Loans		Unsubsidized Stafford Loans	없음
FDLP	정부	PLUS Loans	부모		

주 : 1) 학생(차입자)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상환유예나 연기 중인 경우 교육부가 이자를 지급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금 조달처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하면서 연방정부에서는 단순히 지급 보증만을 해주는 형태의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FFELP)과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이 기금을 직접 대출해주는 형태의 Ford Direct Student Loan(FDLP),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자금을 조성해 대출을 해주는 Federal Perkins Loan Program(FPLP) 등으로 구분
- 학생이 차입자가 되는 Perkins Loan, 학부모가 차입자가 되는 Parents Loan Undergraduate Student(PLUS)

○ 정부의 이자 지원 여부에 따라 Unsubsidized Stafford Loan과 Subsidized Stafford Loan으로 구분

○ 위 유형 구분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님, 즉 FFEL이나 FDL 프로그램은 Perkins Loan, Stafford Loan 방식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음

○ 최근 Subsidized Stafford Loan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Unsubsidized Stafford Loan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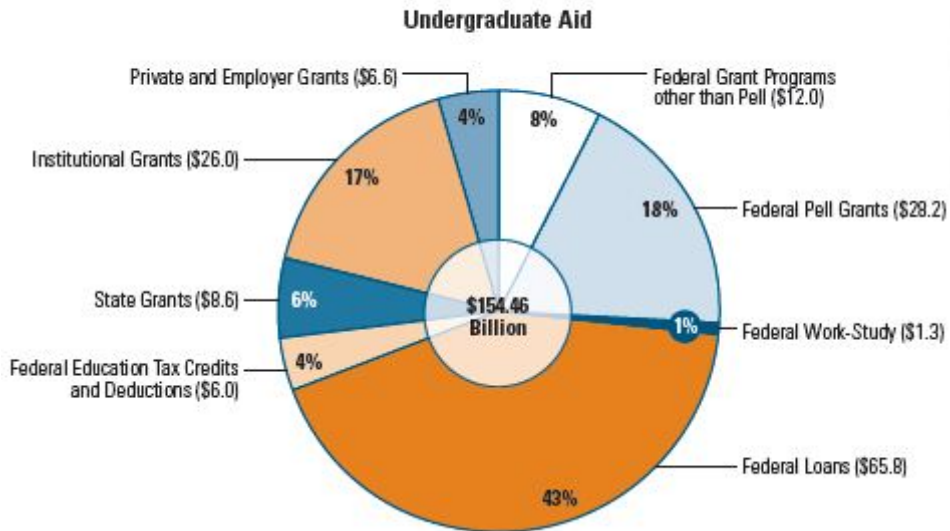
<표 7> 1999-2010 미국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Academic Year										10-Year %Change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Preliminary 09-10
<b>Federal Programs Grants</b>												
Pell Grants	\$9,312	\$9,915	\$12,102	\$13,920	\$14,881	\$14,952	\$13,989	\$13,564	\$15,173	\$17,907	\$28,213	203%
SEOG	\$800	\$786	\$838	\$867	\$890	\$876	\$858	\$816	\$797	\$742	\$758	-5%
LEAP	\$32	\$50	\$67	\$79	\$77	\$75	\$72	\$68	\$67	\$63	\$63	95%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s	—	—	—	—	—	—	—	\$256	\$319	\$332	\$503	
SMART Grants	—	—	—	—	—	—	—	\$217	\$212	\$196	\$361	
Veterans	\$1,926	\$2,049	\$2,285	\$2,766	\$3,111	\$3,425	\$3,501	\$3,487	\$3,594	\$4,096	\$9,470	392%
Military and Other Grants	\$1,062	\$1,092	\$1,206	\$1,255	\$1,498	\$1,664	\$1,654	\$1,743	\$1,751	\$1,846	\$1,954	84%
<b>Total Federal Grants</b>	<b>\$13,132</b>	<b>\$13,892</b>	<b>\$16,498</b>	<b>\$18,887</b>	<b>\$20,458</b>	<b>\$20,991</b>	<b>\$20,073</b>	<b>\$20,150</b>	<b>\$21,913</b>	<b>\$25,182</b>	<b>\$41,321</b>	<b>215%</b>
<b>Loans</b>												
Perkins Loans	\$1,422	\$1,426	\$1,503	\$1,746	\$1,919	\$1,878	\$1,756	\$1,712	\$1,430	\$941	\$1,106	-22%
Subsidized Stafford (FDLP)	\$20,915	\$20,417	\$21,100	\$23,353	\$25,808	\$27,090	\$26,935	\$26,471	\$30,083	\$32,380	\$36,741	76%
(FFELP)	(\$6,934)	(\$6,352)	(\$6,217)	(\$6,559)	(\$6,643)	(\$6,474)	(\$6,030)	(\$5,501)	(\$6,060)	(\$8,100)	(\$14,190)	105%
Unsubsidized Stafford (FDLP)	\$15,717	\$16,335	\$17,812	\$20,323	\$22,951	\$24,838	\$26,019	\$25,767	\$28,317	\$39,682	\$44,689	61%
(FFELP)	(\$4,768)	(\$4,613)	(\$4,777)	(\$5,152)	(\$5,193)	(\$5,190)	(\$5,118)	(\$4,709)	(\$5,083)	(\$9,114)	(\$16,721)	251%
(FFELP)	(\$10,948)	(\$11,723)	(\$13,035)	(\$15,171)	(\$17,758)	(\$19,648)	(\$20,901)	(\$21,058)	(\$23,224)	(\$30,568)	(\$27,968)	155%
PLUS (FDLP)	\$4,244	\$4,600	\$5,001	\$5,816	\$7,299	\$8,372	\$9,019	\$10,817	\$11,138	\$11,761	\$14,165	234%
(FFELP)	(\$1,451)	(\$1,473)	(\$1,535)	(\$1,825)	(\$2,122)	(\$2,275)	(\$2,338)	(\$2,370)	(\$2,385)	(\$3,392)	(\$5,934)	309%
(FFELP)	(\$2,793)	(\$3,127)	(\$3,466)	(\$3,991)	(\$5,177)	(\$6,097)	(\$6,681)	(\$8,446)	(\$8,753)	(\$8,369)	(\$8,231)	195%
Other Loans	\$146	\$144	\$143	\$150	\$147	\$160	\$173	\$170	\$129	\$128	\$133	-9%
<b>Total Federal Loans</b>	<b>\$42,444</b>	<b>\$42,923</b>	<b>\$45,559</b>	<b>\$51,388</b>	<b>\$58,124</b>	<b>\$62,338</b>	<b>\$63,903</b>	<b>\$64,936</b>	<b>\$71,098</b>	<b>\$84,892</b>	<b>\$96,834</b>	<b>128%</b>
<b>Federal Work-Study</b>	\$1,185	\$1,170	\$1,252	\$1,312	\$1,296	\$1,230	\$1,158	\$1,103	\$1,099	\$1,090	\$1,417	20%
<b>Education Tax Benefits</b>	\$5,340	\$5,180	\$5,170	\$5,980	\$6,460	\$6,880	\$6,840	\$6,970	\$6,850	\$6,690	\$6,970	31%
<b>Total Federal Aid</b>	<b>\$62,101</b>	<b>\$63,166</b>	<b>\$68,479</b>	<b>\$77,567</b>	<b>\$86,338</b>	<b>\$91,440</b>	<b>\$91,974</b>	<b>\$93,159</b>	<b>\$100,960</b>	<b>\$117,853</b>	<b>\$146,542</b>	<b>136%</b>
<b>State Grants</b>	\$5,250	\$5,940	\$6,336	\$6,925	\$7,016	\$7,520	\$7,534	\$8,023	\$8,269	\$8,224	\$8,722	66%
<b>Institutional Grants</b>	\$19,780	\$20,240	\$20,550	\$21,120	\$23,200	\$24,620	\$26,270	\$27,740	\$28,430	\$29,710	\$33,380	69%
<b>Private and Employer Grants</b>	\$6,890	\$7,290	\$7,780	\$8,410	\$9,020	\$9,690	\$10,390	\$11,050	\$11,940	\$11,710	\$10,550	53%
<b>Total Federal, State, Institutional, Private Aid</b>	<b>\$94,021</b>	<b>\$96,636</b>	<b>\$103,145</b>	<b>\$114,023</b>	<b>\$125,574</b>	<b>\$133,271</b>	<b>\$136,169</b>	<b>\$139,972</b>	<b>\$149,599</b>	<b>\$167,497</b>	<b>\$199,194</b>	<b>112%</b>
<b>Nonfederal Loans</b>	\$5,170	\$5,600	\$6,800	\$9,090	\$11,830	\$15,690	\$18,840	\$21,590	\$23,260	\$10,960	\$8,500	64%
(State-Sponsored)	(\$650)	(\$620)	(\$730)	(\$720)	(\$820)	(\$910)	(\$1,210)	(\$1,480)	(\$1,450)	(\$880)	(\$800)	23%
(Private Sector)	(\$4,520)	(\$4,980)	(\$6,070)	(\$8,370)	(\$11,010)	(\$14,780)	(\$17,630)	(\$20,110)	(\$21,810)	(\$10,080)	(\$7,700)	70%
<b>Total Funds Used to Finance Postsecondary Expenses</b>	<b>\$99,191</b>	<b>\$102,236</b>	<b>\$109,945</b>	<b>\$123,113</b>	<b>\$137,404</b>	<b>\$148,961</b>	<b>\$155,009</b>	<b>\$161,562</b>	<b>\$172,859</b>	<b>\$178,457</b>	<b>\$207,694</b>	<b>109%</b>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그림 9> 2009-2010 학부생 학자금 대출 유형 비교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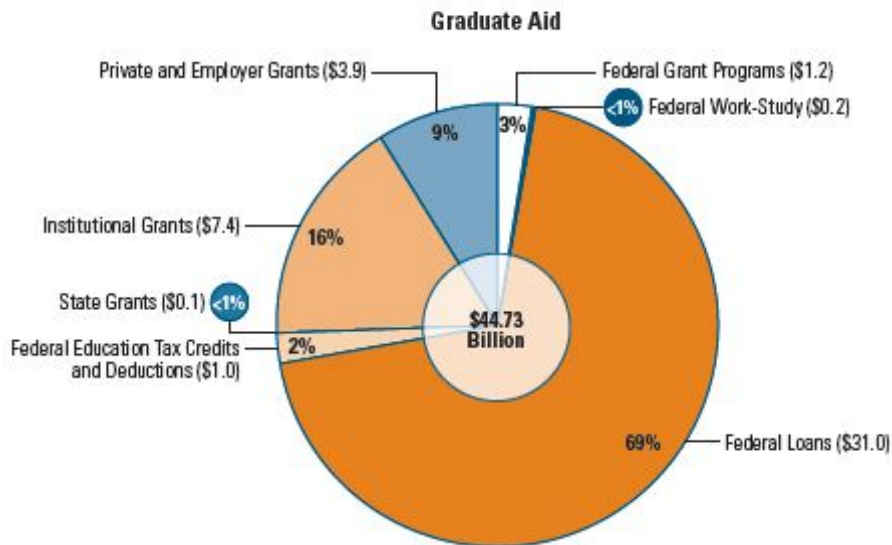
Undergraduate Student Aid by Source (in Billions), 2009-10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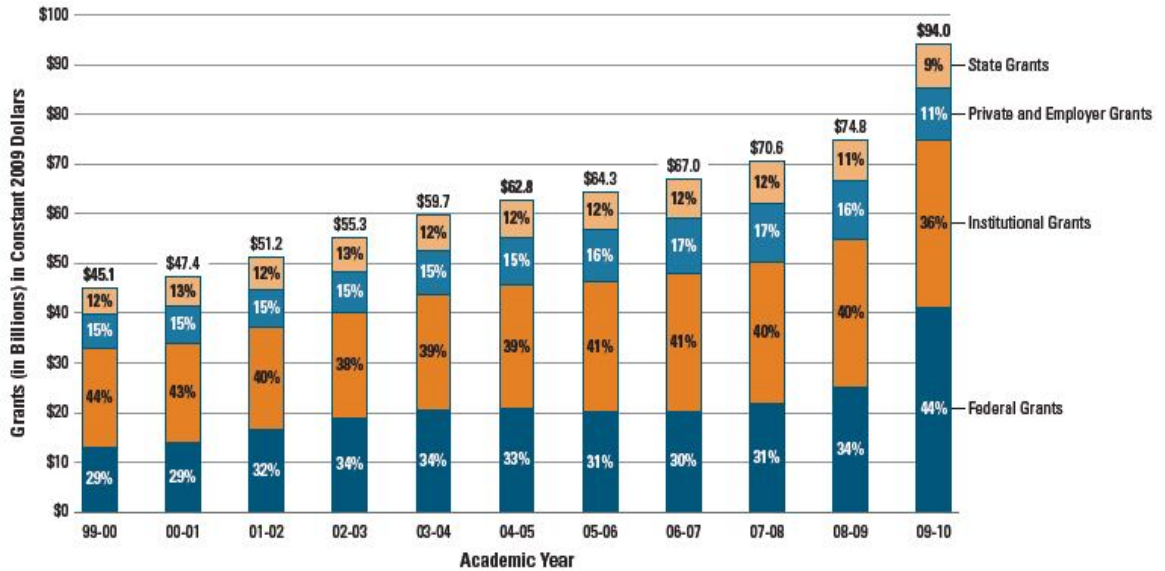
<그림 10> 2009-2010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유형 비교 (단위 십억 달러)

Graduate Student Aid by Source (in Billions), 20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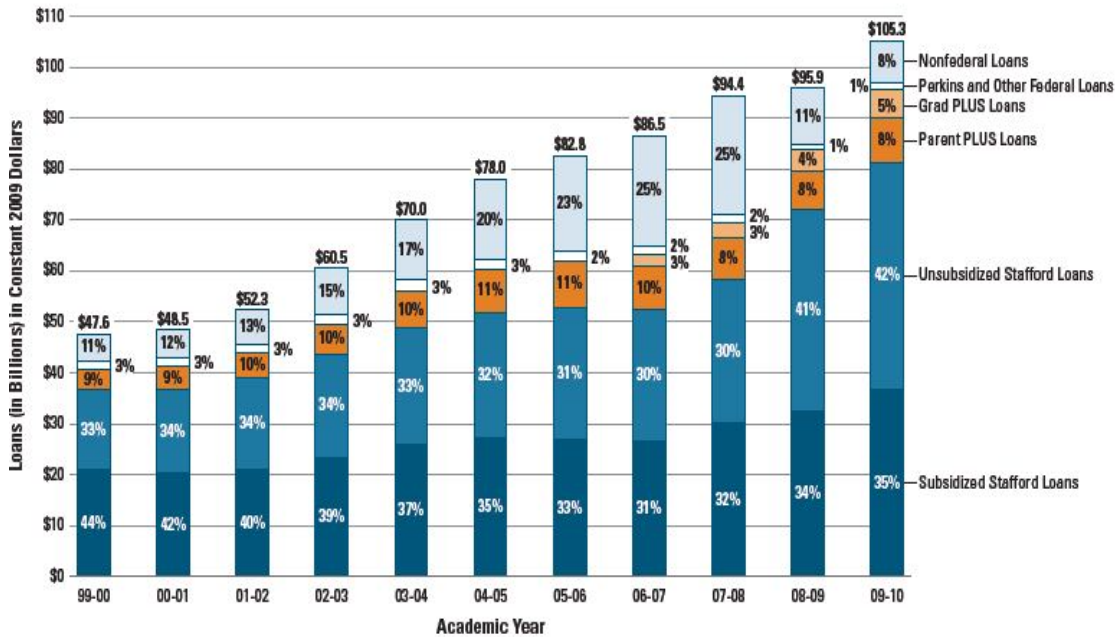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그림 11> 미국 총 장학금 규모의 증가 및 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그림 12> 미국 총 학자금 대출 규모의 증가 및 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다. 연방정부의 주요 학자금 대출 상품

○ Federal Unsubsidized Stafford Loan

-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품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2008년부터 6.8%의 고정 금리 적용
- 학년 및 상황에 따라 연간 5,500-20,500\$까지 대출 가능

○ Federal Subsidized Stafford Loan

-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계소득확인 (family income test)를 통해 대상자 선정
- 2008년부터 6.0% 고정 금리 적용
- 학년에 따라 연간 3,500-8,500\$까지 대출 가능

○ Federal PLUS Loan for Parents

- 학부모를 차입자로 하여 대출해주는 상품
- 2006년부터 7.9-8.5%의 고정 금리 적용
- 대출 가능 금액은 다른 대출의 여부 및 금액 등에 따라 정해짐

○ Federal Perkins Loan

- 5.0%의 고정 금리 적용
- 재학 중 이자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졸업 후 최대 10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 학부생은 5,500\$까지, 대학원생은 8,500\$까지 대출 가능

4)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가. 현황

- 주립대학들의 경우 주내 (In-State) 거주 학생들은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에 비해 절반 이하의 등록금을 내는 학비 감면 혜택을 받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당연히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일부 주립대의 경우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 및 근로봉사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 학생과 동일한 학비감면 혜택을 주기도 함, 예를 들어 Minnesota State University, Mankato 의 경우 일정 수준 이

상의 성적 (학점 2.5 이상) 및 근로봉사 (주당 25시간)를 조건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 학생과 동일한 학비감면 혜택 부여함

- 사립대학들의 경우 주내 거주 학생, 타주 거주 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정책에 차이가 없으나 학교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는 사실상 각 학교의 자율적 권한에 의해 제한적인 부분에서 시행 중임

#### 나. 학교별 사례

##### ○ University of Kansas

- International Merit Awards : 외국인 학부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경쟁 선발을 해서 연간 5,000 달러에서 10,000 달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KU-IIE : 이 학교와 국제교육연구원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과 공동으로 시행 중인 장학제도이며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해 연간 21,000 달러까지, 최장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함

##### ○ Pittsburg State University

- 피츠버그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International Academic Excellence Scholarship 제도를 운영 중임
- 학부에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데, 교환학생, 정부 및 관련기관 장학생, 단기 과정 학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선발된 학부생들은 학기당 1,000달러의 학비를 감면 받음
-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도 유사한 장학제도 시행 중

##### ○ Montana State University

- 학부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첫 해 3,500 달러까지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SAT 등 입학 관련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3.0 (B) 이상의 성적을 유지할 경우 학교 장학금 상황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 5) 기부금 제도

### 가. 기부 가능 자산

#### ○ 현금, 수표 및 신용카드

-가장 간단한 기부 형태

#### ○ 유가증권

-기부자가 유가증권을 기부하면 대학 측에서 이를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취득 당시에 비해 가치가 많이 상승한 유가증권을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

#### ○ 부동산

-토지, 주택, 별장 등 수익용 자산 기부

-전부 또는 일부매각 및 일부기부 형태로 가능

-생애 수익형 기부 (life income gift) 형태로 기부 가능

-주택을 기부하되 사망시까지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유보하는 것도 가능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 ○ 동산

-책, 그림, 골동품, 가구, 보석 등 동산 기부 가능

-증여공제 및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산 기부의 대가로 생존동안 반대급부 수령 가능

### 나. 기부 형태

#### ○ 평생 수익형 기부 (life income gifts)

-대학이 기부자에게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소득을 지급

-무수익 또는 저수익 자산을 기부하고도 소득 지급 받을 수 있음

-공익 잔여재산 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s)

- 공익 연금형 기부 (Charitable Gift Annuities) : 즉시형, 이연형, 점증형, 가변형, 교육연금 등
- 합동 수익 기금 (Pooled Income Funds) : 여러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을 모아 펀드 형태로 운영, 안정형, 균형형, 성장형 등

○ 유증 (Bequests)

- 유언의 형태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동산 등을 기부

○ 공익선행신탁 (Charitable Lead Trust)

- 자산을 공익선행신탁에 기부
- 신탁종료시에 원본이 기부자에게 귀속되는 기부자 공익선행신탁 (Grantor Lead Trusts), 비기부자 공익선택신탁 (Non-grantor Lead Trust)로 구분

다. 기부금 운영 시스템 사례

- 미국 대학들은 동문이나 기업 등 기부자들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 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유효적절하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일례로 하버드대는 기부 받은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적인 회사 Harvard Management Company (HMC)를 가지고 있음
- HMC는 약 2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회사이며 보스턴 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4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 중임
- 중립적 자산분배 원칙 (neutral asset allocation)에 따라 미국 및 외국의 주식, 사채, 사모 펀드 (private equity), 부동산 등 11개 자산으로 분류하여 투자하고 있음

<표 7> 2010 미국 대학 기부금 랭킹 1-30

Rank	Institution	State/ Province	2010 Endowment Funds (\$000)	2009 Endowment Funds (\$000)	*Percentage Change (%)
1	Harvard University	MA	27,557,404	26,138,239	5.4
2	Yale University	CT	16,652,000	16,327,000	2.0
3	Princeton University	NJ	14,391,450	12,614,313	14.1
4	The University of Texas System	TX	14,052,220	12,163,049	15.5
5	Stanford University	CA	13,851,115	12,629,094	9.8
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	8,317,321	7,880,321	5.5
7	University of Michigan	MI	6,564,144	6,000,827	9.4
8	Columbia University	NY	6,516,512	5,892,798	10.6
9	Northwestern University	IL	5,945,277	5,445,260	9.2
10	Texas A&M University System & Foundations	TX	5,738,289	5,083,754	12.9
11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5,668,937	5,170,539	9.6
12	University of Chicago	IL	5,638,040	5,094,087	10.7
13	University of California	CA	5,441,225	4,937,483	10.2
14	University of Notre Dame	IN	5,234,841	4,795,303	9.2
15	Duke University	NC	4,823,572	4,440,745	8.6
16	Emory University	GA	4,694,260	4,328,436	8.5
17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MO	4,473,180	4,080,554	9.6
18	Cornell University	NY	4,378,587	3,966,041	10.4
19	University of Virginia	VA	3,906,823	3,577,266	9.2
20	Rice University	TX	3,786,548	3,612,884	4.8
21	Vanderbilt University	TN	3,044,000	2,867,541	6.2
22	Dartmouth College	NH	2,998,302	2,824,894	6.1
23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	2,947,978	2,671,426	10.4
24	New York University	NY	2,370,000	2,094,000	13.2
25	Johns Hopkins University	MD	2,219,925	1,976,899	12.3
26	University of Minnesota & Affiliated Foundations	MN	2,195,740	2,085,550	5.3
27	Brown University	RI	2,155,330	2,017,292	6.8
28	University of Pittsburgh	PA	2,032,798	1,837,216	10.6
29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Foundations	NC	1,979,222	1,905,081	3.9
30	The Ohio State University	OH	1,869,312	1,651,561	13.2

자료 : 미국 대학 경영자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NACUBO)

라. 기부자에 대한 혜택 (세제 혜택, 기여 입학제 등)

○ 세제 혜택

- 미국에서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 총소득의 50%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됨
-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현금 또는 다른 자산 등 기부자산의 종류, 기부형태, 기부 받는 단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세 소득의 10%임
- 개인 또는 법인의 공제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에도 총소득의 50% 한도는 적용되나 대규모 기부금에 대해서는 6년에 걸쳐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는데, 교육기관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공제함
- 세법상 유산세 (Estate Tax)는 사망 시에 남기는 부동산, 동산, 유형 및 무형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교육기관에 유증하거나 이전하는 재산은 공제 받음

○ 기여 입학제

- 미국 대학들에서는 거액 기부자의 자녀 등에 대해 특례 입학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적인 기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부자와 학교 사이의 비공식적 협의에 의해 학교 측이 입학 여부를 결정함
- 미국 대학들의 대표적 특징인 학사 운영의 자율성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의 명성, 전통 등에 따라 천차만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 해당 대학들이 오랜 기간 기부금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사회라는 점이 기여 입학제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References

College Board. 2010. *Trends in Student Aid 2010*.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1.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A Test of Leadership : Charting the Future of U.S. Higher Educ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Guide to US Department of Education Programs Fiscal Year 2010*.

Federal Student Aid, <http://studentaid.ed.gov>

Harvard University, <http://www.harvard.edu>

Yale University, <http://www.yale.edu>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nces.ed.gov/programs/coe>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ed.gov>

<http://colleges.usnews.rankingsandreviews.com/best-colleges/rankings/national-universities>

Virginia State, <http://portal.virginia.gov/government/>

김정주. 2009.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한국정책지식센터.

박정수 외. 2008.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유현숙 외. 2009.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외. 2009. “미국의 대학 특성화 정책” 교육정치학연구 16-2.

이전오 외. 2007. “대학의 기부금 신탁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황홍규. 2010. “대학의 법적 거버넌스에 관한 비교 연구” 교육법학연구 22-1.